

의안번호	2207156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5.1.7.
추계번호	24E64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유에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제외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유에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를 제외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28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640억원(연평균 328억원)으로 추계

- 개별소비세: 5년간 △1,296억원(연평균 △259억원)
- 교육세: 5년간 △194억원(연평균 △39억원)
- 부가가치세: 5년간 △149억원(연평균 △29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328	-328	-328	-328	-328	-1,640	-328
개별소비세	-259	-259	-259	-259	-259	-1,296	-259
교육세	-39	-39	-39	-39	-39	-194	-39
부가가치세	-29	-29	-29	-29	-29	-149	-29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제외 - 현행 중유 개별소비세율: 17원/L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제2항(과세대상과 세율)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감소되는 세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석유 제품 중 내수용 제품의 생산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한정함
 -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석유가스 등)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¹⁾에 따라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수출용 제품(나프타·항공유·윤활유 등)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된 개별소비세 환급
 - 따라서 공제·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나프타·항공유 등 석유제품 중 내수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를 대상으로 추계
- 개별소비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수 감소분까지 추계함

1)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개별소비세수 감소분 추계

□ 추계기간 동안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 투입량은 2023~2024년 평균 수준인 5,861천kl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원료용 중유 사용량은 정제 효율성, 원유·석유제품 가격 등 경제성에 따라 유동적이며 개별 정유사의 정제설비 특성에 따라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2023~2024년 평균치 활용
 - 2021~2022년의 경우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²⁾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중유 투입량 증가
- 중유 투입량 자료는 대한석유협회 제출자료로, 2024년은 추정치임
 - 참고로, 2024년 10월까지의 실적치는 5,573천kl임

[표 2]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투입량: 2020~2024년

(단위: 천kl)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추정)
투입량	3,903	5,062	3,920	5,067	6,657

자료: 대한석유협회

□ 개정안에 따른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중유량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 투입량에 정유사 전체 생산량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내수용 석유제품 생산량의 비중(2021~2023년 평균 26.0%³⁾)을 적용하여 산출

-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중유량 =

$$\frac{\text{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 투입량} \times \text{개별소비세 비과세 석유제품 중 내수용 제품 생산량}}{\text{전체 석유제품 생산량}}$$

2)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3) 대한석유협회 자료. 다만, 해당 자료는 중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석유제품 생산량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내수용 석유제품 생산량의 비중이 아닌 전체 석유제품 생산량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내수용 석유제품 생산량의 비중을 의미함.

$$= 5,861\text{천kl} \times 26.0\% = 1,525\text{천kl}$$

- 개별소비세 비과세 중유량에 세율(17원/L)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개별소비세 세수효과 : $1,525\text{천kl} \times 17\text{원/L} = 259\text{억원}$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비과세할 경우 2026~2030년 5년간 개별소비세는 총 1,296억원(연평균 259억원) 감소 예상

[표 3] 개별소비세수 감소분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개별소비세	-259	-259	-259	-259	-259	-1,525	-259

(2)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수 감소분 추계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개별소비세액 × 세율 15%’로 추계
-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 × 세율 10%’로 추계
- 따라서 2026~2030년 5년간 교육세는 총 194억원(연평균 39억원), 부가가치세는 총 149억원(연평균 29억원) 감소 예상

[표 4]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육세	-39	-39	-39	-39	-39	-194	-39
부가가치세	-29	-29	-29	-29	-29	-149	-29

(3) 추계결과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유에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를 제외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328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640억원(연평균 3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증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시 세수효과: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개별소비세	-259	-259	-259	-259	-259	-1,296	-259
교육세	-39	-39	-39	-39	-39	-194	-39
부가가치세	-29	-29	-29	-29	-29	-149	-29
전체	-328	-328	-328	-328	-328	-1,640	-328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